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2010년 9월 1일(수) 10시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자료문의 >

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서덕호 팀장, 이응대 사무관(2110-4623)

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나주범 과장, 김정애 사무관(2150-4572)

경제자유구역 내실있게 개발된다

- 정부,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-

□ 앞으로 i) **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**해지고, **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**됨. ii) 경제자유구역내 **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**되고,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·정보서비스 등 **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**됨. iii) 또한, 경제자유구역청의 **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**되고, **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**됨

□ 정부는 **9월 1일(수)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**(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)에서 지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 **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」**을 확정, 발표하였음

○ 지경부는 **제도 출범 8년째를**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**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**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,

○ **올해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元年**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**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軸으로 한 종합대책**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

□ 금번 발표된 대책에서는 **단기 과제로 ①엄격한 지정·개발기준 마련, ②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, ③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, ④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** 4개 분야, 9개 세부정책과제와

○ **중장기 과제**로 **①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, ②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**을 통한 **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** 등 2개 과제를 제시하였음

[1] 경제자유구역 **신규지정과 관련**하여 **개발수요·재원조달계획·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**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**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**키로 하였고,

*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4개 지역(충북, 강원, 경기, 전남)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·전문가 평가·관계부처 협의·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'11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

*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시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 결정

○ **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하여**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**아파트·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**되는 것을 억제하고, **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**하기로 하였음

2 또한, **조기개발을 유도**하기 위해 기업도시·산업단지 등과 같이 **일정기간**(예: 3년)**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**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**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**하고,

○ 경제자유구역별 **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**하여 그 결과를 **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**하는 **경쟁체제를 도입하여**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키로 하였음

3 **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**하기 위해 **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%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**토록 제도화하고, **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·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***하기로 하였으며,

* 현재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·물류·의료·R&D만 감면 대상이며, 제조업은 첨단기술산업과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위주로 조정

○ 외국 교육·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**핵심 잔존규제***들을 조속히 개선**하기로 하였음

* 교육관련 규제 :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, 의료관련 규제 :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

※ 현재 「외국교육기관특별법」 개정안(원유철 의원, `08.6)과 「외국의료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(황우여 의원, `08.11)이 국회 계류중

4 **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**하기 위해 **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·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**함으로써 **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**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구역청내 계약직·별정직 등 **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% 미만 수준에서 30%까지 확대**하고, **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(2년)을 설정**하며, 구역청장의 **조직·인사·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**하기로 하였음

○ 또한,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**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**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**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절차를 가미***하도록 하고, **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****하기로 하였음

* 신규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

* (현재) 진입도로·간선도로·공동구에 대해 건설비용의 50% 지원 → (변경) 진입도로·용수도·폐수처리장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% 지원

5 **중장기적으로** 지속발전 가능한 **'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'을 정립**하기 위해 금년중에 **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**을 마련하고,

○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·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**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,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**하기로 하였음

□ 지경부는 **「경제자유구역특별법」 개정,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,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**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**'경제자유구역위원회'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**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